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

내 용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「장애인연금 사업안내」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도록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¹⁾에게는 장애수당²⁾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.

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구의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, 아래 [표]와 같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36명의 장애인에게 1~60개월간 15,460,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.

[표]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(2017년 8월 기준)

(단위 : 명, 원)

1)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~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경증장애인(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)

2) 장애수당(기초): 3만원/월(2013~2014), 4만원/월 (2015~2017) / 장애수당(시설): 2만원/월(2013~2017)

자치구	합계		장애수당(기초)		장애수당(시설)		장애수당 (기초/시설)	
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계	4	2,960,000	2	1,200,000	1	1,200,000	1	560,000
동구	4	2,960,000	2	1,200,000	1	1,200,000	1	560,000

자치구	합계		장애수당(기초)		장애수당(시설)		장애수당 (기초/시설)	
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서구	12	5,100,000	9	4,120,000	3	980,000	-	-
남구	7	2,980,000	5	1,600,000	2	1,380,000	-	-
북구	5	1,500,000	3	360,000	2	1,140,000	-	-
광산구	8	2,920,000	3	1,080,000	5	1,840,000	-	-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,960,000 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5,100,000 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,980,000

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,500,000 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,920,000 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